

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(이민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4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9. 3.

발 의 자 : 이민근(인), 성준모, 홍순목, 박은경
윤석진, 손광승, 김동수, 이상숙, 신성철
김진희, 정승현, 김재국, 김정택, 윤태천
김동규, 박영근, 유 화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3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「안산시 주차장 조례」의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를 규정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도 0.6%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.

이는 현재 주택 건축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○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를 개정.(안 제 12조의2제1항제4호)

개정조례안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 : 담당부서 검토의견 접수 후 예고 예정

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의2제1항제4호

4. <삭 제>

부 칙

이 조례는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2(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 주차장의 규모)</p> <p>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</p> <p>2. 주택지조성사업</p> <p>3. 아파트지구개발사업</p> <p>4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</p> <p>5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</p> <p>6.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</p> <p>7. 도시철도건설사업(「철도건설법」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「도시철도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p> <p>8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</p>	<p>제12조2(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 주차장의 규모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삭 제>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